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24
------	------

2025. 4.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임만균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4.2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만균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3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촉진과 운영을 활성화 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구체화의 필요성

-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¹⁾의 개정에 의해, 2023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었음.

1)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²⁾의 개정을 통해 위
의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규정이 신설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이 적용되는 전국 1,194개의 박물관·
미술관 중, 서울시에는 181개의 박물관·미술관이 등록되어 있으며³⁾
광역시·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박물관·미술관이 운영
되고 있음⁴⁾.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 통보되지 않아, 서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⁵⁾.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함에 있어,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2023년 12월 기준.

4) 경기도 186개소, 서울 181개소, 강원도 119개소, 전남 103개소 순임.

5)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서울시 內 박물관·미술관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구 분	총 계			국립			공립			대학			사립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계	1종	2종
총 계	181	158	23	17	16	1	28	25	3	31	30	1	105	87	18
박물관	134	119	15	15	14	1	23	21	2	28	28	0	68	56	12
미술관	47	39	8	2	2	0	5	4	1	3	2	1	37	31	6

※ 1종 : 100㎡ 이상 전시실, 수장품 100점 이상 / 2종 : 82㎡ 이상 전시실, 수장품 60점 이상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 수립·시행(안 제3조의2제2항)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 개정안은 매년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이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핵심 정책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진흥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위와 같은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동 개정안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2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임만균,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중화,
박철성, 봉양순, 서상열,
송재혁, 유정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최민규, 최재란,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3조의2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계획에 포함된 순감소나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추진 기본방향, 역량강화 방안, 관람 활성화 방안 등)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